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344 발의연월일: 2021. 1. 13.

발 의 자:이종성·김영식·허은아

정운천 · 이종배 · 김형동

백종헌・이 용・최춘식

임이자 의원(10인)

제안이유

'09년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이후 방한 외국인환자는 지속 증가하여 '19년에는 49만명을 넘어섰으며, 유치 등록기관도 지속 증가 중임.

한국의료의 국제적 신임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실질적으로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유치기관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관리·감독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유치기관 등록제, 평가·지정제 등 기존 제도를 개선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 유치기관 관리·감독 사무의 지방이양('21.1.1시행)에따라 보고 및 검사, 위임근거 등을 마련해 집행을 내실화하며, 규제를 개선해 환자 유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외국인환자에 안전하고 수준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치업 등록의 결격사유(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

유치기관의 질 제고, 종사자의 준법의식 고취 및 환자안전과 보호를 위해 동 법 위반행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법인의 대표자 포 함)의 경우 유치기관 등록을 제한하고(제3항)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함(제4항).

나.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명칭 변경(안 제6조제5항)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명칭을 유치사업자로 변경함.

다. 유치업 등록의 변경신고 및 말소 신청 등(안 제6조의2)

유치업 변경사항에 관한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 및 정보제공을 위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유치사업자는 휴·폐업 등의 사유로 유치업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도지사에 신고하도록 함.

라. 유치기관 평가ㆍ지정제 명칭 변경 및 인증 취소 등(안 제14조)

기존 우수 유치기관에 대한 평가·지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평가·지정제의 명칭을 평가·인증제로 변경하고(제1항), 인증 및 재인증의 유효기간을 4년으로 하되, 조건부 인증의 경우 1년으로 하고기간 내 재인증을 받도록 하고(제3항), 인증기관의 경우 인증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제6조제5항의 등록을 갱신하지 않거나 제2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인증등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고(제4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증등을 받은 유치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제5항제3호).

마. 의료광고 허용지역에 관광특구 추가(안 제15조제1항제6호)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제15조의 의료광고가 허용되는 지역에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중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시·도지사가 정하는 지역"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함.

바. 유치기관 등 자료협조 요청 근거 신설(안 제18조의2)

외국인환자 유치와 관련한 종합·효과적인 계획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 및 의료해외진출 신고기관, 유치의료기관 또는 유치사업자의 장에게 관련 자료제공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사. 시 · 도지사 권한의 위임 · 위탁(안 제21조의2)

시·도지사가 동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군·구청장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제1항),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지급 업무를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제2항), 제1항의 시·군·구청장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제3항).

아. 유치기관 보고 및 검사(안 제22조의2)

유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과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및 시·도지사가 유치의료기관 또는 유치사업자에 서류제출 요구 및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자. 부실기관 관리를 위한 등록 취소 사유 추가(안 제24조제1항제4호 의2)

등록 내실화와 부실기관 관리를 위해 제24조에 따른 등록취소 사유에 등록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 유치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휴업한 경우를 추가함.

차. 인증 유치기관 취소, 마크 사용정지 및 시정명령 요건 구체화(안 제25조)

인증 유치기관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 제14조제6항의 인증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마크의 사용 정지 및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함.

카. 마크 도용 제재(안 제29조제3호의3)

인증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29조(벌칙)의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미인증 상태에서 인증마크를 제작·사용하거나 인증을 사칭한 자를 추가함.

타. 과태료 부과(안 제31조제2항)

변경신고 및 보고 및 검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제6조의2에 따른 등록 변경 및 휴·폐업 사항을 미신고한 경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검사 등을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률 제 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 전의 제3항) 중 "유치업자"를 "유치사업자"로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할 수 없다.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로 있는 법인의 경우도 이와 같다.
- 1.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 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자가 제3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 게 되면 그 등록은 효력을 잃는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폐업의 신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는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이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유치업자"를 "유치사업자"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유치업자"를 "유치사업자"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유치업자"를 각각 "유치사업자"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유치업자"를 "유치사업자"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중 "지정"을 "인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유치업자"를 "유치사업자"로, "그 결과 일정 수준을 충족한 유치기관을 선별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를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유치기관을 인증하거나 조건부인증을 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정을"을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로, "지정받았음을"을 "인증받았음을"로, "표시"를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본문 중 "지정의"를 "인증의"로, "지정을"을 "인증을"로, "2년"을 각각 "4년"으로, "재지정"을 "재인증"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지정을 받은 유치기관이 제2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의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다"를 "조건부인증의 경우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며, 조건부인증을 받은 유치기관은

유효기간 내에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인증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평가 및 지정, 제3항에 따른 재지정"을 "평가 및 인증등"으로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인증, 조건부인증 또는 제3항에 따른 재인증(이하 "인증등"이라 한다)을 받은 유치기관이 제6조제5항에 따른 갱신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2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인증 등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인증등의 효력이 상실된다.
- 3.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제15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시·도지사가 정하는 지역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협조 요청)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제4조에 따른 의료해외진출 신고 의료기관의 장,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장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 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제4호 중 "지정"을 "인증등"으로 한다.

제4장에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1조의2(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시·도지 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 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위임 또는 제2항에 따른 위탁을 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치업자"를 "유치사업자"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보고·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23조제2항 중 "유치업자"를 각각 "유치사업자"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제4호 중 "유 치업자"를 각각 "유치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 및 제10호 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등록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외국인환자 유치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휴업하는 경우

10. 등록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제25조의 제목 중 "지정의"를 "인증등 및 지정의"로 하고, 같은 조 제 1항 중 "제14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유치기관이 제24조제1항"을 "인증 등을 받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다음"으로, "해당하거나 제31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할"을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등을 취소하거나 인증마크의 사용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지정"을 각각 "인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에 따른 인증등의 취소"로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등을 받은 경우

- 2. 제14조제6항에 따른 인증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3.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4. 제31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제27조제1항제1호 중 "유치업자"를 "유치사업자"로 한다.

제29조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의3.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마크를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등을 사칭한 자제3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6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 제출, 또는 검사를 기피・거부・방해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유치기관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유치기관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제6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①・② (생	략)		등록) ①·②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
			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외국인환자 유
			치에 대한 등록을 할 수 없다.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
			로 있는 법인의 경우도 이와
			<u>같다.</u>
			1.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
			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
			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_
			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후 1년이 지
			<u>나지 아니한 자</u>

<신 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라 한다)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외국인환자 <u>유</u>친업자"라 한다)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 ⑥ (생 략)

<신 설>

제7조(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① 저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u>유치업자</u>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양도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자가 제3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그 등록은 효력
을 잃는다.
<u>⑤</u>
<u>#</u>
<u>치사업자</u>
$\underline{6}$ \sim $\underline{8}$ (현행 제4항부터 제6
항과 같음)
세6조의2(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폐업의 신고) 외국인환
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는 그 등록한 사항
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
한 때에는 이를 시 도지사에
게 신고하여야 한다.
세7조(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①
<u>유치사업자</u>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생 략) 제8조(외국인환자의 권익 보호)

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u>유치업자</u>는 제6조 제3항에 따라 발급된 등록증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의료기관 또는 사업장 내에 게시하고,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환자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을 외국인환자가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9조(과도한 수수료 등의 제한)
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u>유치업자</u>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때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수수료율의 범위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거짓 정
보를 제공하는 등 중대한 시장
질서 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 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수수료 또는 진료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외국인	환자의	권익	보호)
1			
	<u>유</u> 치스	<u> 업자</u> -	
			,
② (현행과	같음)		
제9조(과도한	수수료	등의	제한)
제9조(과도한 ①	수수료		제한)
_			
①			
①			
①			
①			
①			
①			
①	유치시		
	유치시		

비의 부과 실태를 조사하여 공 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반 영하여 적정한 수수료율의 범 위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의무) 외국인환자 유 기 지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 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4조(유치기관 평가 및 <u>지정</u>) 기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 자 유치를 지원하고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진료과목, 전문 인력 보유 현황 및 국내 의료 서비스 발전 기여도 등을 고려 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이하이 조에서 "유치기관"이라 한다)를 평가하고 그 결과 일정수준을 충족한 유치기관을 선별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u>지정을</u> 받은

 제11조(보고의무) ①
<u>유치</u> 사업자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유치기관 평가 및 <u>인증</u>)
①
<u>유치사업자</u>
<u>평가 결과에</u>
따라 우수한 유치기관을 인증
하거나 조건부인증을 할 수 있
<u>다</u> .
②인증 또는 조건

유치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 <u>부인증을</u> 는 바에 따라 <u>지정받았음을</u> 나 -------타내는 <u>표시</u>를 사용할 수 있다. ------

③ 지정의 유효기간은 그 지정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하고, 2년 단위로 재지정할 수 있다. 다만, 지정을 받은 유치기관이 제2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의 유효기 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지정의 요력이 상실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유치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지원을 할 수 있다.

1. • 2. (생략)

<신 설>

<u> 구인등을</u>
<u>인증받았음을</u> -
<u>표시(이하 "인증마크"</u>
라 한다)
③ <u>인증의</u> <u>인증</u>
<u>을4년</u>
<u>4년</u> 재인증
조건부인증의 경우 유효
기간을 1년으로 하며, 조건부인
증을 받은 유치기관은 유효기
간 내에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증, 조건부
인증 또는 제3항에 따른 재인
증(이하 "인증등"이라 한다)을
받은 유치기관이 제6조제5항에
따른 갱신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2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
소된 경우에는 인증등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인
증등의 효력이 상실된다.
<u> </u>
<u> </u>
1.•2. (현행과 같음)

<u><신</u> 설> 3. (생 략)

- ⑤ 제1항에 따른 <u>평가 및 지정,</u> 제3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의료광고에 관한 특례) 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2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다. 다만, 환자의치료 전·후를 비교하는 사진·영상 등 외국인환자를 속이거나 외국인환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관한 광고는 하지 못한다.

1. ~ 5. (생 략) <u><신 설></u>

3.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u>4.</u> (현행 제3호와 같음)
<u>⑥</u> <u>평가 및 인증</u>
<u> </u>
세15조(의료광고에 관한 특례) ①
,,
<u>.</u>
1. ~ 5. (현행과 같음)
6.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
라 지정된 관광특구 중 보건
복지부렁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
내나 보신국시구경선과 업의

하여 시 · 도지사가 정하는 지

역

② ~ ④ (생 략) <신 설>

의 위탁·재위탁 등) ① 보건 복지부장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효 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을 갖춘 법인으로 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기

제18조의2(협조 요청) 보건복지부 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제4조에 따른 의료해외진출 신고 의료 기관의 장, 외국인환자 유치의 료기관의 장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 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지원기관의 지정 및 업무 제21조(지원기관의 지정 및 업무 의 위탁ㆍ재위탁 등) ① -----

② ~ ④ (현행과 같음)

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 다.

- 1. ~ 3. (생 략)
- 4. 제14조에 따른 유치기관 평 4. -----가 및 지정 업무
- 5. 6. (생략)
- ② ~ ④ (생 략)
- <신 설>

- 1. ~ 3. (현행과 같음)

----인증등----

- 5. · 6. (현행과 같음)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의2(권한의 위임 및 업무 의 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시 · 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 부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군 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는 제27조제1항 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에서 제1항에 따른 위임 또는 제2항에 따른 위탁을 하는 경 우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제22조(시정명령) ① (생 략)

② 시·도지사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나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 4. (생 략) <u><신</u> 설>

제23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① 제23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①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2조(시정명령) ① (현행과 같
<u>o</u>)
②
<u> 유치사업자</u>
1. ~ 4. (현행과 같음)
제22조의2(보고·검사) ① 보건복
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
국인환자 유치사업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
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
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
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필요
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
<u>다.</u>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
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
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생 략)

- ② 이 법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아니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 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24조(등록의 취소) ① 보건복지 저 부장관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 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u>유치업</u> <u>자</u>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제1항 · 제2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2. (생략)
 - 3. 외국인환자 <u>유치업자</u>가 외국 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 외국인환자와의 진료계약을 소개・알선한 경 우
 - 4.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 <u>유치업자</u>가 아닌 자에게 외국인환자와의 진료 계약 소개·알선을 받은 경

<신 설>

(현행과 같음)
2
<u> 유치사업자</u>
유치사업자
세24조(등록의 취소) ①
유치사
업자
<u>.</u>
1.・2. (현행과 같음)
3 <u>유치사업자</u>
4
유치사업자
4의2.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5. ~ 9. (생략) <신 설> ②·③ (생 략)

제25조(지정의 취소) ① 보건복지 제25조(인증등 및 지정의 취소) ① 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지정 을 받은 유치기관이 제24조제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거나 제31조에 따라 과태료 취소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신 설>

<신 설>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등록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외국인환자 유치 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휴업하는 경우

5. ~ 9. (현행과 같음)

10. 등록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②·③ (현행과 같음)

-----인증등을 받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다음-----해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등을 취소하거나 인증마크의 사용정 지 또는 시정을 명할-----.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인증등을 받은 경우
- 2. 제14조제6항에 따른 인증등 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3.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4. 제31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지정</u>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u>지정</u>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 3. (생 략)
- ③ <u>제1항</u>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에 대한 절차는 대통령으로 정한다.
- 제27조(신고자포상) ① 시·도지 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 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 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 다.
 - 1. 외국인환자가 아닌 자를 유 치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 관 또는 외국인환자 <u>유치업자</u>
 - 2. · 3. (생략)
 - ② (생 략)
-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

<u>을 받은 경우</u>
②
<u>인증</u>
·
<u>인증</u>
1. ~ 3.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인증등의 취
<u>소</u>
제27조(신고자포상) ①
 .
1
<u>유치사업</u>
자
 2.·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벌칙)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u><신 설></u>

4. (생 략) 제31조(과태료) ① (생 략) <신 설>

②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3의3.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마크를 사용하 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 등을 사칭한 자

4. (현행과 같음)

제3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6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사

 항의 변경 또는 휴업·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 제출, 또는 검사를 기피·거부·방해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한 자

③ (현행 제2항과 같음)